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924
----------	------------

제안연월일 : 2026년 3월 10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개정조례안 안 제10조제5호 단서의 규정이 식단 변경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인 알레르기나 특정 메뉴 부족 등으로 일부 학생에게 대체식단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조례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이 경우 일부 학생에게 제공되는 대체식단은 예외로 한다’ 라는 내용을 후단에 신설함.

2. 주요내용

- “이 경우 일부 학생에게 제공되는 대체식단은 예외로 한다” 를 후단에 신설함(안 제10조제5호 단서).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5호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일부 학생에게 제공되는 대체식단은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학교급식의 정보 공개) 제3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5. ~ 7. (생략)</p>	<p>제10조(학교급식의 정보 공개)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제4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의 열량과 식단 사진. 다만, 제4호의 식단표와 다른 식단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식단이 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p> <p>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p>	<p>제10조(학교급식의 정보 공개)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제4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의 열량과 식단 사진. 다만, 제4호의 식단표와 다른 식단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식단이 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 <u>이 경우 일부 학생에게 제공되는 대체식단은 예외로 한다.</u></p> <p>6. ~ 8.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의 열량과 식단 사진. 다만, 제4호의 식단표와 다른 식단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식단이 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 이 경우 일부 학생에게 제공되는 대체식단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학교급식의 정보공개) 제3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5. ~ 7. (생략)</p>	<p>제10조(학교급식의 정보공개)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제4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의 열량과 식단 사진. 다만, 제4호의 식단표와 다른 식단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식단이 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 이 경우 일부 학생에게 제공되는 대체식단은 예외로 한다.</u></p> <p>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p>